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8월 26일 평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5일
- 다. 상정일자 : 제29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9월 9일) 상정
 -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년 9월 12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예산과장 주현관)

가.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과 현안사업, 당초 미부담사업 및 주민 생활불편해소 등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61,99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2,82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5,149백만원이 증액된 647,316백만원, 특별회계는 7,678백만원이 증액되어 114,682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4,202백만원, 지방교부세 12,376백만원, 조정교부금등 30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5,690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58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80백만원임.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35,713백만원, 재무활동 9,270백만원, 행정운영 경비 166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7,135백만원, 재무활동 543백만원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영옥)

가. 예산안 총규모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1,998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2,82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647,31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149백만원(7.50%)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14,68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78백만원(7.17%)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5,149백만원이
증액된 647,316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202백만원이 증액된 25,024백만원으로
이자수입 2,500백만원, 재산매각수입 1,65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2,376백만원이 증액된 307,253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9,739백만원, 특별교부세 1,800백만원,
부동산교부세 83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00백만원이 증액된 10,178백만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30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690백만원이 증액된 194,01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15백만원, 시·도비보조금 3,074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06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1,10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5,149백만원이 증액된 647,316백만원임.
 -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35,713백만원이 증액된 512,437백만원
 - 재무활동은 9,270백만원이 증액된 59,357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166백만원이 증액된 75,52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 농림해양수산 122,358백만원(18.90%)
 - 사회복지 117,627백만원(18.17%)
 - 환경 64,194백만원(9.92%)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 조직별 세출예산은
 - 가족복지과 84,556백만원(13.06%)
 - 농업기술센터 82,345백만원(12.72%)
 - 행정담당관 77,331백만원(11.95%) 순으로 편성됨.
 - 기정액 대비 증감률은
 - 도시과 47.83%
 - 관광정책과 43.59%
 - 건설과 28.34% 순으로 증액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256,601백만원(39.64%)

경상이전 212,821백만원(32.88%)

인건비 71,100백만원(10.98%)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4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4,68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67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25백만원이 증액된 26,90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공사비 등의 편성에 따른 것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3백만원이 증액된 58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임.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백만원이 증액된 14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임.

○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백만원이 증액된 1,20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 편성에 따른 것임.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107백만원이 증액된 85,8413백만원이며,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증액 등에 따른 것임.

마. 계속비사업

□ 「지방자치법」제143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41개 사업으로,

▶ 총사업비는 640,552백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3,743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 신규 편성된 사업은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20,223백만원 1개임.

【계속비 사업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이후
		당초	변경	증감			
합계	41 개사업	616,809	640,552	23,743	302,323	137,452	200,777
1	평화 테마파크 조성	35,750	36,840	1,090	35,750	1,090	0
2	대화 축구장 조성	3,960	3,960	0	0	1,980	1,980
3	진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9,670	9,670	0	0	400	9,270
4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2단계	2,650	2,650	0	1,821	829	0
5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3단계)	3,000	3,000	0	500	1,430	1,070
6	평창 수확아카데미 조성사업	8,250	9,650	1,400	6,249	1,400	1,999
7	평창 에코랜드 조성	8,700	9,330	330	8,700	630	0
8	행복+학습센터 조성	17,600	17,600	0	8,990	0	8,610
9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23,100	23,100	0	3,920	5,284	13,896
10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 우스 조성	8,000	8,000	0	0	600	7,400
11	대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4,200	24,200	0	12,949	0	11,250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이후
		당초	변경	증감			
12	비점오염저감사업(횡계천)	6,154	6,154	0	6,154	0	0
13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조성	11,000	11,000	0	9,700	1,300	0
14	하송빈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11,627	11,627	0	11,627	0	0
15	평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20,619	20,619	0	4,356	16,194	69
16	여만처리분구 외 6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28,125	28,125	0	4,165	23,772	187
17	봉평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13,614	13,614	0	2,013	3,235	8,366
18	백운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19,792	19,792	0	1,694	17,620	478
19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	6,904	6,904	0	1,086	1,713	4,105
20	도돈 농어촌마을하수도 신설	14,363	14,363	0	795	1,648	11,920
21	창리 소규모마을하수도 설치	6,001	6,001	0	803	443	4,755
22	평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 업	3,373	3,373	0	0	158	3,215
23	평창 치유의 숲 조성	5,500	5,500	0	3,900	1,600	0
24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5,500	5,500	0	4,100	1,400	0
25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	8,750	8,750	0	5,650	3,100	0
26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구축	15,000	15,000	0	5,500	1,875	7,625
27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조성	10,100	10,100	0	6,500	3,600	0
28	대화면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 생형)	0	20,223	20,223	0	750	19,473
29	홍정천(용평지구) 지방하천 정비	25,594	25,594	0	25,594	0	0
30	차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 비사업	28,846	28,846	0	0	1,800	27,046
31	외거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	28,846	3,900	0	0	200	3,700
32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7,100	27,100	0	16,318	4,684	6,098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23년 까지	2024년	2025년 이후
		당초	변경	증감			
33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31,261	31,261	0	9,214	11,885	10,162
34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9,929	9,929	0	8,273	1,656	0
35	후명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 정비사업	20,745	20,745	0	5,873	5,516	9,356
36	하진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5,000	35,000	0	14,680	9,200	11,120
37	개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200	5,200	0	252	3,463	1,484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9,100	39,100	0	31,000	0	8,100
39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조성	12,920	12,920	0	3,680	1,200	8,040
40	용평·진부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6,675	26,675	0	26,675	0	0
41	안미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	18,936	19,636	700	13,840	5,796	0

바. 종합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을 보면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761,998백만원 규모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12,376백만원, 조정교부금 300백만원, 보조금 5,68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4,202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928백만원, 전년도이월금 6,469백만원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 30,26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교부세 47.47%, 보조금 29.97%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각각 6.48%, 3.8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구성비율

- ① 지방교부세(47.47%) > ② 보조금(29.97%) > ③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10.64%) > ④ 지방세(6.48%) > ⑤ 세외수입(3.87%) >
 ⑥ 조정교부금부(1.57%) **※ 자체자원: 10.35%(지방세+세외수입)**

국세 감소 기조 속에서 의존수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이번 세입예산안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외에는 자체수입의 변동이 거의 없는 등 세입의 전망이 어두운 반면, 대규모 현안 사업과 의무지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체 세원 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과태료·과징금 등의 철저한 수납 등 자체 자원 확충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2회 추경 지방교부세 예산액 】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비고
2024년	307,353	
2023년	340,797	23.09.19 의결
2022년	383,154	22.09.23 의결

- 금회 추경의 주요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 중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집행잔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다음연도 상반기에 전년도 회계결산이 이루어진 후 확정됩니다.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금	집행잔액	비고
2023년	62,650	38,065	24,585	
2022년	42,838	3,277	39,561	
2021년	28,321	11,029	17,292	

최근 3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8,321백만원, 2022년 42,838백만원, 2023년 62,650백만원이며,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7,000백만원, 1회 추경에 39,178백만원, 이번 추경안에 16,47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 대비 35.67% 증가하였고 1회추경

시에는 559.69%, 2023년 1회추경시 323.25%, 2회추경시 42.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초예산 편성시 과소 추계한 결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 부족을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의 규모는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고 잉여금의 과도한 축소편성이 적시 사업 투자를 지연시켜 기회비용을 매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만큼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고려하여 잉여금 편성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680백만원이 증가한 9,637백만원으로 주요 증가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658백만원 증가한 2,158백만원으로 이는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을 위하여 대관령면 횡계리 산304번지 외 9필지를 매각한 매각대금 분납금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계약당시 납부한 계약금 712백만원은 1·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모두 누락되어 있어 재정위기의 시기에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동원육영회 교육 및 연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각대금 현황 】

(단위 : 원)

구분	회수	분납금	납부기일	비고
합계(①+②+③)		7,123,000,000		
① 계약금		712,300,000		세입 미반영
② 소계		2,096,151,300		
수련시설	1회 중도금	698,717,100	24.10.31	2회추경 반영
	2회 중도금	698,717,100	25.04.30	
	잔금	698,717,100	25.10.31	
③ 소계		4,314,548,700		
교육시설	1회 중도금	958,788,600	24.10.31	2회추경 반영
	2회 중도금	958,788,600	25.04.30	
	3회 중도금	958,788,600	25.10.31	
	잔금	1,438,182,900	26.04.30	

※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참조

□ 세출예산안을 보면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증액된 금액은
총 52,827백만원으로

- 금회 편성된 300백만원 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46개사업에 28,224백만원이며,
-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300백만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30개사업에 21,684백만원입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은 382,940백만원으로 기정예산(365,132백만원) 대비 17,80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군비 부담액은 12,121백만원입니다.

(※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현황 : 예산안 설명자료 P15)

한편 금회 추경에 편성된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7,088백만원으로 5,406백만원이 증액되어 321.3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국고보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407백만원(이자포함),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17백만원(이자포함), 비료가격 안정지원 384백만원(이자포함)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축산농기계과의 18년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지원사업, 농정과의 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일부 사업은 ‘18년, ‘19년도 반환금이 포함되어 사업 시행 후 정산금 반납까지 5 ~ 6년이 경과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신속한 정산 및 잔액 반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합 계	7,088	1,682	5,406	
국고보조금반환금	5,096	1,041	4,056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992	641	1,350	

○ 성립전 예산은 의회 예산심의권의 예외적 허용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①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②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전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개부서 9개사업 528백만원의 성립전 편성분이 2회 추경에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위탁,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민간위탁,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결과와 연동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의2¹⁾에 의하면, 예산안에는 사업별 설명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별 설명서의 작성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집행부는 세부사업 중 자치단체에서 판단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편제하는 방식으로 작성·제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²⁾에서는 예산안 제출서류의 주요 서식을 정하고 있고 사업별설명서의 서식 또한 정하고 있는 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사업개요와 소요재원, 산출근거 뿐만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물품 정수취득 등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설명자료로서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주요 참고자료가 되며 예산안 심사 전 1주일 가량의 짧은 시간 내에 예산안 전체의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

1)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 행정안전부훈령 제312호, 2023. 11. 7., 일부개정

확하게 작성하여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서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사업별 설명서 서식(③세부사업설명서) 》

세부사업 : ○○-○○

○○세부사업명(신규)

회계연도 : ○○○○년	회 계 : ○○회계
조 직 : ○○실국 ○○과팀	담 당 : ㉓ 부서 직급 성명
기 능 : ○○분야 ○○부문	㉔ 부서 직급 성명
정책사업 : ○○정책사업명	단위사업 : ○○단위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년 ~ ○○년
 - 총사업비 : 천원 (전년까지 기 투자액 : ○○천원)
 -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
 - 사업내용 :
 - 지원형태 : ※ 직접수행, 자치단체·민간 보조, 출연(출자), 용자 등
 -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자원분담, 용자조건, Matching 여부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 추진근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 사전절차이행여부
 - 중기재정계획/투융자/공유재산취득/물품정수취득/기타 등에 대한 이행여부를 표시

□ 소요재원 (단위:천원)

재 원 별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
예 산 총 계				%
국 고 보 조 금				%
균 특 보 조 금				%
기 금 보 조 금				%
특 별 교 부 세				%
시 · 도 비				%
시 · 군 · 구 비				%
지 방 채				%
기 타 (예 산 외)				%
기 초 자 치 단 체 부 담 금 (시 · 군 · 구 비)				%
채 무 부 담				%
민 자				%
재 정 용 자 금				%
기 타				%

- 산출근거 <이하생략>

《 강원특별자치도 사업별 설명서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예산안VI-75쪽)

* 사업코드 : 교통행정 개선(교통및물류/대중교통·물류등기타) -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일반회계)
 * 조 직 : 교통과 대중교통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화된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 불편 해소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 *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24년(연례반복)
- '24년 예산 : 74,350천 원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도 24%, 시군 56%, 자부담 20%
- 사업규모 : 도내 버스터미널 5개소(강릉 1, 삼척 1, 횡성 1, 영월 1, 인제 1)
- 사업위치 : 5개 시군(강릉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인제군)
- 사업내용 : 승객 대합실 개선, 노후 화장실 개보수, 노후 전광판 교체, 지붕 및 단열 판넬 교체공사, 외벽 마감재 탈락 보수공사, 승·하차장 보수공사

□ '24년 추진계획

- 그 동안 추진실적
 - '23년까지 터미널 49개소 환경개선 추진, 3,169백만 원 지원
 - '23년 : 터미널 6개소, 118백만 원 지원
- '24년 추진계획
 - 5개 시군 5개소,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 '24. 1월 ~ 12월
 - 사업 추진사항 중간점검 : '24. 7월

□ 소요예산 : 74,350천 원

(단위 : 천 원)

재 원 별	'24년 예산액 (㉠)	'23년 예산액			비교증감 (㉡=㉠-㉢)	증감률 ㉡/㉢×100
		계 (㉣+㉤)	당초(㉢)	추경(㉤)		
계	74,350	118,000	118,000	0	-43,650	-37.0%
도 비	74,350	118,000	118,000	0	-43,650	-37.0%

<산출기초>

-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74,350천 원
- 버스터미널 5개소(강릉1, 삼척1, 횡성1, 영월1, 인제1) 환경 개선 = 74,350천 원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재정	해당없음	출자출연	해당없음	행사추제	해당없음	용역심의	해당없음	정수물품	해당없음	사회보장	해당없음	총사업비	해당없음
투자심사	해당없음	자방보조금	○	민간위탁	해당없음	공유재산	해당없음	중소기업	해당없음	정보화	해당없음	기타	해당없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한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행정담당관의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구축, 인재육성과의 청소년 편라운지 조성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송 제기, 민원발생 등의 예상치 못한 사유와 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류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업 취소 및 대폭 감액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다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렵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며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밀한 분석과 수요예측을 통해 행정낭비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주요 감액 사업 】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본예산	제2회추경	증감
행정담당관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구축	2,940	0	△2,940
인재육성과	청소년 편 라운지 조성	3,000	0	△3,000
올림픽체육과	진부천연잔디구장 보수공사	50	0	△50
농정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도비)	45	0	△45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자체)	100	30	△70
농산물유통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	11,369	9,943	△1,426

○ 가족복지과의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신규 편성 요청한 건으로, ‘23년 11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⁴⁾

4)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기준을 당초 “만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로 협의하였으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만75세 이상” 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예산편성 및 제도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심의·확정은 「지방자치법」 제47조⁵⁾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이므로 변경 협의시 수 개월이 소요되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보건위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먼저 시행하려는 점과 제도 시행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후 시행이라는 절차적 요건 준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12개 사업 중 용역과제심의 대상 9개 사업은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인재육성과의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제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 설명자료의 사업기간이 6개월 계획으로 기재되어 있어 편성단계부터 이월을 전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의 이월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을 요청할 때에는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의 추진가능한 일정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⁶⁾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여 예산의 이월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확정

6) 제36조(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추진일정 】

(단위: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추진기간	비고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5	착수일로부터 180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50	24.10 ~ 25.03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자료(24.9), p73, p238

또한 산림과의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연구용역은 2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설명서를 첨부하지 않아 과업의 범위, 용역기간, 산출기초 등의 구체적 내용⁷⁾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사업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예산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많으므로 금회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비해 편성 시기가 늦은 만큼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이월액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하반기 준공 시기가 도래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예산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7)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 연구용역비(207-01)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및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 건	주요 내용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제2회 추경 주요 편성현황

1. [표1] 3억원 이상 편성된 예산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13개부서 / 46개사업	71,436	P28

2. [표2]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내역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3개부서 / 5개사업	6,008	P30

3. [표3] 연구개발비(207-01, 207-02) 편성현황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8개부서 / 12개사업	1,055	P31

4. [표4] 행사(축제)성 예산(201-03, 307-04) 편성현황(신규·증액)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7개부서 / 15개사업	876	P32

5. [표5] 민간위탁사업(307-05,402-03) 편성현황(신규·증액)

구 분(예 산 액(백만원)	비고
5개부서 / 6개사업	1,330	P33

6. [표6]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구 분	예 산 액(백만원)	비고
6개부서 / 9개사업	528	P33

※ [표1] 주요사업 현황(300백만원 이상 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재원	비고
		2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합 계	46개 사업	71,436	49,212	28,224		
행정담당관(2)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00	0	300	자체	P144
	재난대응 안내시스템	0	2,940	-2,940	도비보조	P145
인재육성과(2)	평창 수학아카데미 조성사업	1,400	0	1,400	자체	P155
	청소년 편(fun) 라운지 조성	0	3,000	3,000	자체	P155
가족복지과(1)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공사	3,140	2,405	735	국도비	P173
회계과(1)	읍사무소 임시청사 이전 임차료 및 부대비	715	1,140	-425	자체	P191
관광정책과(4)	평창 에코랜드 조성	630	300	330	자체	P198
	계촌클래식 마을 맞춤형 예술 콘텐츠 확대	300	0	300	자체	P200
	계촌클래식 웰컴센터 조성	800	0	800	자체	P200
	오대산 문화축전	400	0	400	도비보조	P207
올림픽체육과(3)	2025 8차 루지 월드컵 개최 지원 (보조)	300	0	300	기금	P211
	평화 테마파크 조성	1,090	0	1,090	자체	P212
	대화 골프연습장 시설개선	1,270	0	1,270	도비보조	P214
도시과(5)	황계8리 송천 경관데크 설치공사	500	0	500	자체	P231
	중부리 고령자복지주택 앞 주차장 조성	1,000	0	1,000	자체	P231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900	0	900	자체	P232
	대화면 도시재생 사업	465	0	465	균특	P232
	평창중부 고령자복지주택 사업비 정산분	2,700	0	2,700	자체	P234
건설과(19)	군도4호선(대미동길) 확.포장사업	1,600	900	700	조정	P241
	(도로유지관리) 임차료	1,484	300	1,184	자체	P241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백만원)			재원	비고
		2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군도 유지보수 사업	1,100	800	300	자체	P241
	군도8호선(도사리) 노면불량구간 정비사업	460	0	460	자체	P241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	1,100	800	300	자체	P242
	대화301호(하일동길) 정비사업	300	0	300	자체	P242
	미탄201호(평안2길) 정비사업	300	0	300	자체	P242
	대관령208호선(삼양목장) 노면불량 구간 정비사업	600	0	600	자체	P242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정비용역	50	400	-350	자체	P243
	지방하천 오대천 유지보수사업	350	0	350	자체	P243
	느므즈므설렘길 인도교 조성사업	2,000	0	2,000	자체	P244
	방림면 계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900	0	900	자체	P245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	500	200	300	자체	P245
	도배수로 정비사업(8개읍면)	3,500	3,000	500	자체	P245
	미날보 도수로 정비사업	400	0	400	자체	P245
	서천평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632	0	632	도비보조	P245
	농산물 반출도로 정비사업	3,300	2,500	800	자체	P246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	2,280	1,640	640	자체	P246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4,616	3,737	879	균특	P246
안전교통과(3)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684	3,724	960	균특	P251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10,685	7,120	3,565	균특	P252
	미탄면 마하리 낙석위험지구 개선사업	400	0	400	특별	P253
산림과(1)	미탄면 창리 소공원 조성사업	600	0	600	특별	P261
보건정책과(1)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비	775	470	305	자체	P275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재원	비고
		2회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가액		
농정과(3)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민간위탁금	850	0	850	균특	P292
	평창 농촌중심지활성화 위탁비	1,617	2,467	-850	균특	P29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시행계획 수입 용역	500	0	500	자체	P292
농산물유통과(1)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지원	9,943	11,369	-1,426	기금	P298

※ [표2] 토지 및 건물 취득예산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예산서P)
계	5개 사업	6,008	
관광정책과	계촌 클래식 웰컴센터 조성	800	P200
도시과	중부리 고령자복지주택 앞 주차장 조성	1,000	P231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900	P232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1,000	P232
안전교통과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2,308	P254

- 의결(또는 심의) 내역

사업명	공유재산 의결시기
계촌 클래식 웰컴센터 조성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 제출
중부리 고령자복지주택 앞 주차장 조성 ⁸⁾	대상아님.
진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대상아님.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⁹⁾	대상아님.
평창터미널 부지 및 건물매입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 [표3] 연구개발비(207-01, 207-02) 편성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계	12개 사업	1,055	50	1,005	
인재육성과 (1)	평창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45	0	45	P155
관광정책과 (3)	노람뜰 국민관광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 용역	50	0	50	P198
	대관령 산악관광거점 조성 기본구 상 및 타당성 용역	50	0	50	P198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	70	50	20	P199
경제과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50	0	50	P221
도시과 (1)	진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20	0	220	P232
안전교통과 (1)	평창군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수립 용역	15	0	15	P255
산림과 (3)	산양삼 융복합 지원센터 운영 연구 용역	22	0	22	P260
	치유의 숲 조성사업 위탁운영 타당 성 검토 용역 ¹⁰ (1천만원 이하)	10	0	10	P260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위탁운영 타당성 검토용역(1천만원 이하)	10	0	10	P261
농정과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 획·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	0	500	P292
기술지원과 (1)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개발 (국가보조금)	13	0	13	P303

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⑨ 전
 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표4] 행사축제성(201-03, 307-04)예산 편성현황(신규·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15개 사업	876	152	724	
행정담당관 (4)	이장협의회 교류 행사	4	2	2	P143(자체)
	평창군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	18	15	3	P144(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 대회 지원	30	0	30	P144(자체)
	2024년 제야의 올림픽대중 타종 행사	40	0	40	P144(자체)
관광정책과 (2)	축제 프로그램 운영 지원	22	0	22	P200(자체)
	대관령눈꽃축제 행사지원	250	0	250	P200(자체)
문화예술과 (1)	평창예총 사업지원	140	120	20	P205(자체)
올림픽체육과 (5)	2025 8차 루지 월드컵 개최지원(보조)	300	0	300	P211(기금)
	강원특별자치도 시니어 순회 볼링 대회	5	0	5	P212(자체)
	해파700 평창백일홍배 강원특별자치도 동호인 테니스대회	19	0	19	P212(자체)
	평창 패러글라이딩 페스티벌	10	0	10	P212(자체)
	평창군 유소년 승마대회 및 트레킹 대회	15	0	15	P212(자체)
경제과(1)	지역특화 청년사업	22	0	22	P222(자체)
축산농기계과 (1)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교육운영	0	15	-15	P302(자체)
상하수도사업소 (1)	물절약 홍보 캠페인	1	0	1	P411(자체)

- 10) 「평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적용범위) 따른 심의 제외 대상임.
-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공사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종합기술용역
 -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
 -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표5] 민간위탁(307-05,402-03)예산 편성현황(신규·증액)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편성액			비고 (예산서P)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계	6개 사업	1,330	426	904	
가족복지과 (2)	중부고령자복지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180	167	13	P174(자체)
	어린이 실내놀이터 위탁금	138	110	28	P180(자체)
올림픽체육과 (1)	스카이타워 체험시설 운영 위탁금	125	130	-5	P211(자체)
안전교통과 (1)	평창공영버스터미널 민간관리 위탁운영	20	0	20	P253(자체)
환경과 (1)	고랭지밭 흙탕물저감 호밀식재 사업	17	19	-2	P267(도비)
농정과 (1)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 민간위탁금	850	0	850	P292(균특)

※ [표6]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성립전 요구액	비고
계	9개 사업	528	
복지정책과 (1)	정부양곡 관리	14	3차(국비)
문화예술과 (1)	문화유산 긴급보수(보조)	30	1차(국비)
건설과 (3)	폭염대응	26	1차(도비)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00	2차(도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150	2차(도비)
산림과 (1)	강원공공산림가꾸기	42	3차(도비)
농산물유통과 (2)	2024년2월 대설 피해농가 지원(국가직접지원)	21	1차(도비)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	30	4차(도비)
축산농기계과 (1)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115	5차(기금)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음

【붙임1】 202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결조서 1부.

「2024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 결 조 서

1. 예산총칙

- 제1조 :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61,998,004	22,859,940
일반회계	647,315,605	19,419,468
특별회계	114,682,399	3,440,472
공기업특별회계	26,907,090	807,213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6,907,090	807,213
기타특별회계	87,775,309	2,633,2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9,295	17,6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4,875	4,346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1,200,101	36,003
수질개선특별회계	85,841,038	2,575,231

-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 제3조 : 2024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 제4조 :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 와 같다.
- 제5조 :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
- 제6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8,580,300천원으로 한다.
- 제7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6,400,000천원으로 한다.
- 제8조 :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2. 예산의결 내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원안가결

나. 기타 특별회계 : 원안가결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원안가결

3.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사업 : 원안가결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